**진정 개요**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인권옹호활동을 목표로 결성된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피진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이하 한국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설치된 국내연락사무소로서, 현재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NCP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피진정인으로 삼습니다.

**진정 취지 요약**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NCP가 (1) 라오스 세피안ᆞ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관련 이의제기사건과 (2)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이의제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특별감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기 위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 이유 요약**

**1. 라오스 세피안ᆞ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제기사건**

한국NCP는 라오스 세피안ᆞ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제기사건에서 1차 평가 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문기술적인 조사 연구의 수행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연구는 한국NCP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NCP는 “전문기술적 판단 및 조사가 가능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더욱이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댐 붕괴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한국NCP는 최종성명서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NCP는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진정인의 조사연구 요청에 대한 판단을 최종성명서에서 누락한 점은 운영규정 위반이자 적법절차 위반한 인권침해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한국NCP는 주선과정에서 조정위원회 구성 외에는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선의 진행상황에 대해 최종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의견제출을 요구 받은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NCP는 조정의 결렬과 주선의 종료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조정이 결렬되자 주선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정인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선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정보제공과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조정의 결렬 이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점은 적법절차 등을 위반한 인권침해입니다.

2.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제기사건(‘2번 사건’)**

한국NCP의 운영규정은 1차평가 결과에 대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NCP는 본 사건의 1차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 뿐, 이의제기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아 운영규정 위반 및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권침해를 범하였습니다.

한편, 한국NCP는 1차평가 결과를 발표한 이후, 피이의제기자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절차 상의 이유를 들어 1차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NCP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검토 절차 개설은 규범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으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진정인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한국NCP는 이례적인 재검토 절차의 진행에 대해 진정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두번째 1차평가에서 한국NCP는 첫번째 1차평가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다국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두번의 1차평가가 이루어진 근거와 결정의 사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국NCP의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자의적 재검토 절차 개설과 이후의 불투명한 절차 진행 및 1차평가 발표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결론**

한국NCP는 이의제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운영규정에 근거가 없는 사항(재검토)을 보칙을 통해 근거짓는 등의 자의적 행정절차의 집행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에게 진행되는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히 고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 위반을 계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절차의 진행 전반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주무부처 차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관련 공무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징계 내지 수사의뢰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러한 점이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건들은 한국NCP의 자의적인 행정처리의 방증이고 그 궁극적인 원인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임무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무부처의 선정 및 법적 통제 없는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에게는 주무부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개선계획의 이행과 그 실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국회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사항들(국가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이의제기 사건의 처리 등)을 입법사항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각 권고되어야 할 것입니다.